
과 업 지 시 서

- 2025년도 정밀안전점검 용역 -

2025. 07.

목 차

1. 과업의 목적	-----	page. 1
2. 과업의 개요	-----	page. 1
3. 과업 수행조건	-----	page. 2
4. 과업의 일반지침	-----	page. 3
5. 보안대책	-----	page. 4
6. 안전관리	-----	page. 4
7. 성과품 제출	-----	page. 5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미시령터널에 대한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025년도 미시령터널 정밀안전점검용역

2) 대상시설물 : 미시령터널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구 분	시설유형	종별	등급	연장	폭	구조형식	준공년도
상행	터널	1종	B	3,565	9.8	NATM	2006년
하행	터널	1종	B	3,520	9.8	NATM	2006년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년 10월 29일까지

구 분	안전점검일 기한	e보고서 제출기한	비 고
정밀안전점검	2025년 09월 29일	2025년 10월 29일	

4) 과업의 범위

- ① 자료수집 및 분석
- ② 현장조사
- ③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한 안전점검
- ④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자료입력
- ⑤ 종합평가 및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3. 과업 수행조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착수계
- ②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 ③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에 관한 세부공정계획
- ④ 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각서
- ⑤ 안전관리 및 교통처리계획

2) 과업수행 우선순위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선순위는 구조물의 실정과 구조안전상 우선수행이 필요한 내용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록사진 촬영

과업수행 시 각 사업별로 기록사진을 촬영한다.

4) 시설의 일부 굴착, 절취 작업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작업상 불가피하게 시설의 일부굴착, 절취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발주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협의 후 시행한다.

5) 시설물 현장조사 시 부득이한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 시설물 전후에 안전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성과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96 호(2025. 04. 22.)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e보고서 제출기한 30일전에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내용상 미비·과오 등의 결격사항은 준공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진행 중 긴급 보완사항 발견 시 즉시 발주자에게 구두 통보한 후, 이를 서류로 구체적인 설명과 내용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4. 과업의 일반지침

- 1)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2) 본 과업지시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3) 본 과업 완료 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한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4)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6) 과업의 성과는 과업 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7) 정밀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시 시설물의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및 시공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중요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8) 구조물 현장조사 시 부득이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 구조물 전후에 안전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9) 입찰자는 교통차단비용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사후 투입비 정산을 고려하여 내역서를 작성하며, 추가 투입분에 대해서 금액을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없

다.

5. 보안대책

- 1) 과업 전반에 대하여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6.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관리 및 재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 점검시 현장에 상주토록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에 이탈할 수 없다.
- 3)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 물질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4) 계약상대자는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용역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나. 안전시설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 1)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및 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및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처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 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성과품 제출

① 종합 보고서	총 3부
② 요약 보고서	총 3부
③ 외관조사망도(A3)	총 3부
④ 보수, 보강 개요도(A3 또는 A4)	총 3부
⑤ 사진첩	총 3부
⑥ 관련 디스켓(CD-ROM 또는 USB)	총 3개
⑦ 기타 발주자가 요구한 자료 등	